

[붙임]

## 2022년(제42회) 대구시현장교육연구대회 추진 요강

1. 연구 대주제: 『변화하는 사회 · 선도하는 현장교육 ·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』

### 2. 대회 취지 및 관계 법령

본 연구대회는 교원의 전문직 자질 향상을 위한 자기연찬의 동기를 제공하고, 교육현장에서의 교수-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1952년부터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주도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, 시행의 법적근거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, 연구실적 평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.

### 3. 연구 분과(1인 1분과, 공동작 가능)

교과분과영역 (10개 분과)	① 국어(한문 포함) ② 도덕 ③ 사회(역사 포함) ④ 수학 ⑤ 과학 ⑥ 실과(기술·가정)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외국어
인성·창의분과영역 (4개 분과)	① 인성교육 ② 창의적체험활동 ③ 생활지도(상담,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등) ④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
교직분과영역 (2개 분과)	① 교육행정(학교경영, 교직생활, 교육정책개발연구, 평생교육교육복지) ② 교육과정운영
유아·특수분과영역 (3개 분과)	① 유아교육 ② 특수교육(청각장애·시각장애·정신지체·지체장애·정서장애) ③ 영재 및 학습부진아교육

\* 진로·직업 관련은 종속변인이나 수업 내용에 따라 창체 혹은 생활지도 등에 응모.

\* 출품편수에 따라 분과별 혹은 영역별 통합심사 가능함.

\* 보고서 겉표지에는 반드시 영역이 아닌 '세부 분과'를 기재해야 함.

**ex) 교육행정(학교경영), 특수교육(정서장애) 등으로 표기**

### 4. 추진 계획

#### 가. 응모자격

유아교육법 제22조(교원의 자격),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(교원의 자격) 및 별표와 고등교육법 제16조(교원·조교의 자격기준 등)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교원과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, 연구직(단, 본 연구대회 및 타 연구대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제재(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)기간 중에 있는 자는 출품할 수 없음)

#### 나. 연구보고서 공모

1) 1차 보고서 응모(온라인으로만 접수)

가) **제출 마감: 2021. 5. 31.(월)**

(대구교총 홈페이지 tfta.or.kr-현장연구-1차보고서 제출)

- 나) 제출 서류/분량: 1차보고서 1부만 업로드, A4 5쪽 내외
- 다) 2차 제출 대상자 결과 발표: 2021. 6월
- 라) 유의사항: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탑재해야 접수 처리됩니다.

2) 2차 보고서 응모

가) 제출 마감일: 2022. 2. 21.(월) 16:30까지

나) 제출 서류: 2차보고서 1부, 응모신청서 1부(소정 양식), 보고서 파일 저장물 1매.

(비회원은 **2차보고서 제출 시** 참가비 6만 원 납부. 농협 725-01-171163 대구교총)

다) 제출 대상: 1차보고서 입선 교원

라) 보고서 분량: 좌철, 70쪽 내외(A4 양면 인쇄, 부록 포함 및 합본, 스프링철 지양)

3) 선행 연구물 도움: 한국교총 홈페이지 kfta.or.kr-전자도서관

4)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: 2022. 4월 예정

**5. 시상 내용**

가. 지역대회: 최종보고서(2차보고서) 제출 편수의 40% 이내 입선(1:2:3등급의 비율은 1:2:3 유지)

나. 전국대회: 지역대회 1·2등급(출품 범위 및 시상 내용은 인정권자의 승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)

**6. 보고서 심사 기준(100점 만점)**

가. 연구의 현장 적용성(50점)

- 1) 연구가 현장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?
- 2) 연구내용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?
- 3)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?

나. 연구 내용(25점)

- 1) 연구내용을 일선교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?
- 2) 연구내용의 분석력과 논리는 적절한가?
- 3) 연구내용이 현장교육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?

다. 연구방법(15점)

- 1) 연구방법이 연구내용에 적절한가?
- 2) 연구의 도구 및 자료 분석이 연구내용에 적합한가?
- 3) 연구의 체제 및 형식이 창의적인가?

라. 연구주제의 접근성(10점)

연구주제 및 내용들이 한국교총이 설정한 앞의 **1. 연구 대주제**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?

※ 출품편수에 따라 분과별 또는 영역별 통합심사 진행함.

## 7. 보고서 작성의 주안점

- 가. 어느 분과를 연구하든지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앞의 **1. 연구 대주제**가 기본 배경이 되도록 함.
- 나. 연구주제는 연구의 핵심이 부각되도록 간결하게 압축하여야 하며, 연구내용은 현장교육 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함.
- 다. 연구 범위를 가급적 문제 해결 분야로 집약시켜 현장교육연구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함.
- 라. 현장교육연구는 학술연구와는 달리 현장교육 문제의 개선이나 발전에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리 전개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며, 문제해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함.
- 마. 연구는 기초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제선정,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, 연구의 목적, 문제의 제기 및 가설 설정, 연구자의 여건, 연구의 시기, 자료수집 가능성, 행·재정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, 반드시 중간 점검을 통해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진행함.
- 바. 선행연구 내용을 1행 이상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하며, 불필요하거나 잡다한 사항의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나열은 연구보고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.
- 사. 불필요한 통계의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.
- 아. 연구의 내용에 적합한 연구분과를 선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자.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형태를 탈피하여 현장교육의 실재를 공개·보고하는 형식의 연구보고서가 바람직함.

## 8. 보고서 출품 시 유의사항

- 가. 보고서 겉표지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분과·주제·해당연도(2022)·소속·직위·성명 등을 기재하면 됨.
- 나. 2개 분과 동시 응모는 불가하며, 파견교사는 원적지의 해당 시·도교총에 응모하여야 함.
- 다. 타 연구대회(전국교육자료전 포함) 중복 출품은 가능함.
  - \* 단, 출품한 연구보고서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일을 기준으로 타 연구대회에 기입상한 사실이 있을 경우 표절·모작 혹은 입상취소 처리함.
- 라. 직위 및 학교급별이 서로 다른 교원과의 공동작은 출품할 수 없음.
- 마. 공동작일 경우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.
- 바. 시범학교 운영연구,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연구 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하여 제출할 경우 표절 처리함.
- 사. 제출 서류 미비 시 연구보고서 접수가 취소될 수도 있음.
- 아. 기 입상한 본인의 연구보고서(입상등급에 관계없이)를 현격히 심화·변형·발전시키지 않고 재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등외 및 표절 처리함. 기존에 입상한 본인의 연구보고서와 유사하게 재제출하는 경우, 반드시 그 내용을 현격히 심화·변형·발전시켰음을 입증하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.

- 자. 교감 및 장학사, 연구사는 직무와 직결된 연구이어야 함.(단,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은 2차보고서 및 전국보고서 제출 시 출품신청서에 해당 사항 기재)
- 차. 출품자가 잘못 지원한 분과 또는 모호한 분과의 경우, 교총에서 출품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.
- 카. 입선자의 경우 우수보고서의 일반화 사업(간행물, 통신 매체의 공개 등)에 동의하여야 함.
- 타. 심사 후에도 표절로 드러난 연구보고서는 입상을 취소함.
- 파. 표절 판정 시에는 판정 입상취소일로부터 3년간 연구대회 참여를 제한함.

## 9.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의사항

『연구대회관리규정』(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69호, 2004. 11. 22. 제정) 제21조(불공정행위의 관리 및 보고) 및 제22조(불공정행위의 제재)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시 입상 취소, 징계 등의 제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(교육부의 연구대회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자 명세(성명, 소속, 출품주제)가 공시되고 입상작이 탑재되며,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불공정 행위를 행한 응모자에 대한 제보가 언제든지 가능함.)

### 가. 불공정 행위의 유형

- 표절과 모작(표절 및 모작 판단기준 예시 참조), 대리 연구물 제출 또는 그 위탁
-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
- 고의적으로 출품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
- 출품자나 관련 교원의 의무위반 행위
- 그 밖에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

### 나.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치

-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및 조치됨.
- 1) 입상 취소
- 2)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
- 3) 연구대회 인정권자(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: 교육부장관, 시·도 현장교육연구대회: 시·도 교육감)에게 입상 취소자 서면 통보, 인정권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불공정 행위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음.

## 10. 표절 및 모작 판단 기준의 예

- 가. 각종 선행 연구물의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, 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쓴 경우(인용표시에 관계없이)
- 나. 선행연구와 다른 연구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가설(중점), 결론 또는 제언의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(인용표시와 관계없이)
- 다. 연구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혹은 일부분을 바꾸어

적용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

- 라.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비교해 볼 때 동일자료(단행본, 논문, 기타 자료)의 동일한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경우
- 마. 이미 발표된 이론 또는 문장, 도표, 삽화, 통계 등을 각주 표시 없이 활용한 경우
- 바. 선행연구의 특수한 모형(또는 도표, 삽화, 통계)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로 정리 해놓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
- 사. 연구자(본인) 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하여 사회에 알려지거나(석.박사 학위 논문 등) 입상한 논문을 부분 변용·기술했을 경우
- 아. 선행연구와 외형적인 구조·구성은 다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
- 자. 시범학교 운영 연구, 시교육청의 정책적 연구결과를 개인연구로 변형·제출한 경우